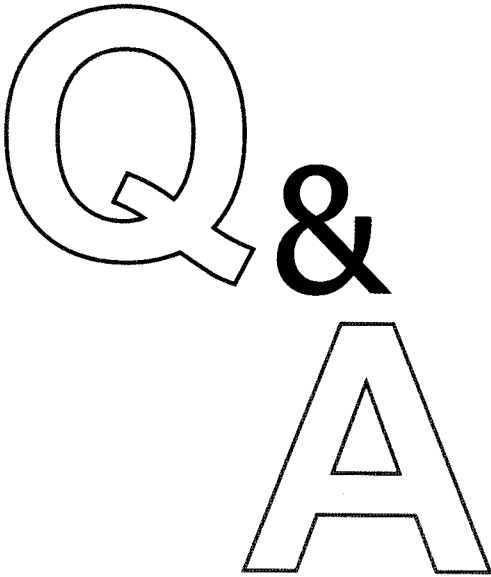


궁금합니다



Question | 가스계 소화설비에서 GLUG-GLUG EFFECT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Answer | glug은 일종의 의성어입니다. 병을 물속에 담으면 물(유체)이 병속으로 들어가는데, 이 때 나는 글럭글럭하는 소리를 표현한 것입니다.

가스계 소화설비와 관련한 보다 전문적인 의미로서의 GLUG-GLUG EFFECT도 병을 물속에 넣었을 때와 비슷한 효과로 생각하면 됩니다. 병을 물속에 넣었을 때 물이 들어간 만큼의 공기가 빠져나와야 물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가스계소화설비의

경우에도 이와 비슷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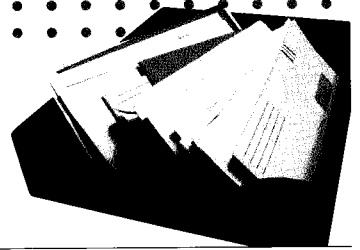
방호구역 내에 개구부가 상·하 두 부분에 있고 소화약제가 방출되었을 경우를 가정해 보겠습니다. 소화약제는 공기와 혼합되어 공기보다 무거운 혼합기체가 됩니다. 이 때 하부의 개구부가 상부의 개구부보다 클 경우가 그 반대의 경우보다 많은 소화약제가 방호구역 외부로 유출됩니다. 따라서 GLUG-GLUG EFFECT는 방호구역 설계능도유지시간의 기준을 개구부의 크기 및 위치에 따라 달리 적용하여야 하는 이론적인 근거가 됩니다.

Question | 자동방화셔터 기준에 보면 제4조1항에 “화재 발생시 연기 및 열에 의하여 자동 폐쇄되는 장치일체로서...”라고 되어 있는데, 꼭 연기·열감지기에 의해서만 폐쇄되는 것을 말하는 것인가요? 퓨즈가 녹아서 자동 폐쇄되는 것은 해당되지 않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셔터 연동 장치가 수동으로 되어있으면 작동을 하지 않는지 궁금합니다.

Answer | 현재 건축법상의 자동방화셔터는 자동방화셔터 및 방화문의 기준(건설교통부 고시 제2005-232호)에 적합하도록 설치되어야 합니다. 동 기준 제4조에서는 자동방화셔터의 구성으로 연기감지기 및 열감지기의 설치를 규정하고 있으므로, 현재로서는 퓨즈 등에 의한 자동방화셔터의 기동은 인정되지 않고 있습니다.

만약 자동방화셔터의 설정이 수동으로 되어있다면, 열 및 연기의 발생에 의하여 자동으로 동작하지 않을 것이며 수동 조작에 의해서만 작동합니다.

이 코너는 방화관리 등의 업무에 종사하는 분에게 도움을 주기 위해 마련한 것으로 근거가 명시되지 아니한 답변은 관련 법률에 의한 공식적인 판단이 아니며, 견해를 달리할 수도 있습니다. 유권해석이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소관부처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Question | '플래시 파이어(Fash Fire)'의 개념이 무엇이며, UVCE와 다른 점이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Answer | Fash Fire란 '인화성 또는 가연성 액체나 가스의 표면을 타고 순간적으로 확산하는 분출성화재'를 말하며, 넓게 퍼진 증기운의 지연발화에 의해 화재입니다. UVCE(Unconfined Vapor Cloud Explosion)는 저장탱크에서 가스가 유출되어 구름처럼 다니다가 점화원과 접촉하여 발생하는 폭발사고입니다. Fash Fire의 경우 폭풍파에 의한 손상이 없으나 UVCE는 손상이 있고, Flash Fire는 화염속도가 증기운의 가연성 영역 전체에 걸쳐 빠르게 확산하나 UVCE 보다 느리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Question | 「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상 특수건물의 소유자는 신체손해배상특약무화재보험(이후 신배책)에 가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신배책은 화재보험 + 풍수재 + 항공기낙하 + 신체배상책임이 자동 가입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 특수건물 중 1층을 임차해서 쓰는 임차자의 경우, 일반 화재보험만 가입하면 되는지, 아니면 임차자 역시 신배책에 가입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2) 만약 임차자 역시 신배책에 가입을 하게 된다면 그 보상은 소유자가 가입한 보험으로 보상 후 임차자의 계약에 구상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는지, 아니면 임차자의 계약으로만 보상이 이루어지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임차

자가 관리 통제하는 층에서 제3자가 화재로 인해 사망할 경우, 소유자의 신배책과 임차자의 신배책 양쪽에서 각각 8천만원씩 중복 보상되는지도 궁금합니다.

3) 앞서의 경우 일반 화재보험만 가입했다가 임차자가 관리 통제하는 층에서 제3자가 화재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 풍수재나 제3자의 화재로 인한 사망사고가 발생하였다면 그 보상과 구상에 있어서 임차자 쪽에 불리한 사항이 생기지 않는지도 궁금합니다.

Answer | 1) 신배책은 「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에서 정한 특수건물의 소유자가 의무적으로 가입하는 보험이므로, 특수건물 일부를 임차 사용하고 있는 임차인은 신배책에 가입할 의무는 없습니다.

2) 그러나 임차인이 어떠한 이유에서 신배책에 가입하였고, 화재로 인해 제3자가 사망(상해, 후유장해) 하였다면 건물 소유자의 신배책과 각각 8천만원씩 중복하여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3) 특수건물의 소유자는 무과실책임주의에 의해 손해배상책임이 있으며, 건물 임차인은 과실책임주의에 의해 타인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이 있습니다. 따라서 임차인의 과실이 없는 사고일 경우 건물주가 가입한 신배책으로 처리가 되고, 임차인의 과실이 있을 경우 임차인도 보상처리를 하여야 할 것이므로, 임차인은 신배책 보험이 아닌 영업배상책임보험을 가입하는 게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